

보도자료

2010년 6월 7일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 정책총괄과 양환정과장(2110) 나.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(2350)
다.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과장(2430) 라. 뉴미디어정책과 조영훈과장(2450)

2010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연장에 관한 건

-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27조에 의거하여 '11.1.1일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·운영토록 결정됨에 따라,
- 현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('08.7.1~'10.6.30)의 임기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임기를 '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함
- ※ 기금관리위원회는 「방송법」 제39조에 따라 방송·광고·법조계·학계 등 전문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(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 2명 포함)
 - 기금관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(당연직)이며,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임(연임가능)
 - 기금관리위원회는 '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', '기금결산보고서 작성', '자산운용지침의 제·개정' 등을 심의함

나. 협찬고지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

-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의 협찬고지규정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

다.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

- '10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(330개 방송국)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(안)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

라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

- '10. 6. 10.~9. 9. 기간에 허가가 만료되는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,
-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

< 허가조건 내용 >

사업자명	허가 조건 내용
공 통 (23개사)	○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%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○ 매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후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
공 통 (MSO계열 19개사)	○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,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PP와 그렇지 아닌 PP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.
(주)큐릭스서대문방송 (주)큐릭스종로중구방송 (주)큐릭스대경방송	○ 2011년 12월 31일 까지 방송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자(큐릭스홀딩스)에게 제공한 대여금을 상환받아야 하며, 재허가 이후에도 대여, 담보제공,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(주)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	○ 2010년 9월 25일 까지 조선아이앤씨와 체결한 경영권 매각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상환하고 주권을 반환받아야 하며, 매월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 ○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한다.
(주)티씨엔대구방송	○ 감사 선임 개선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※ (주)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2개사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, (주)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